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2292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7. 12. 접수 제241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7. C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의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2019. 9. 17.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연체의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20. 2. 18. 주식회사 D에 보험금 37,367,91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34902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31. 'C은 원고에게 37,552,190원 및 그 중 37,367,917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8. 5.까지는 연 7.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C이 이의하지 않아 2020. 8. 20. 확정되었다.

다. C은 2019. 7.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7. 12. 접수 제24160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은 2019. 7. 8.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후 불과 2개월 후인 2019. 9. 17. 대출금 연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20. 2. 18.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 해운대구청, 법원행정처, E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시점의 C의 재산 상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C의 채무초과 상태는 인정된다.

(1) C의 적극재산(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제외)

거제시 F 임야 2700 m² 및 거제시 G 임야 3720 m² 합계 507,540,000 원

(2) C의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C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한다.

① 원고에 대한 채무 37,367,917 원 (2019. 9. 17. 연체)

② H에 대한 채무 16,894,000 원 (2019. 9. 17. 발생)

③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채무 100,000,000 원 (2019. 10. 2. 발생)

④ 통영세무서에 대한 채무 9,646,140 원 (2019. 10. 29. 발생)

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4,000,000 원 (2019. 11. 22. 자 가압류청구금액 ,
2019. 12. 11. 대위변제 14,140,000 원)

⑥ I에 대한 할부금융채무 41,844,000 원 (2019. 11. 25. 발생)

⑦ J 에 대한 채무 2,987,000 원 (2020. 1. 10. 발생)

⑧ K 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462,000 원 (2020. 1. 20. 발생), 300,000,000 원 (2019. 1.

14. 발생)

⑨ 거제시장에 대한 당해세채무 318,370 원

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에 대한 압류채무 4,358,960 원

⑪ 합계 : 527,878,387 원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이 작은 딸의 치료비만을 내 준 것이 미안해서 큰 딸인 피고에게도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는 아버지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